# 포항시 친환경축산물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6년 8월 28일 포항시장

나. 회부일자 : 2026년 9월 1일

다. 상정일자

❍ 제333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2026. 9. 11.) 상정·질의답변·토론·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김정표 농업기술센터장)

### 가. 제안이유

❍ 포항시 친환경 축산물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6. 12.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학교급식에 안전한 친환경축산물 식재료 공급과수급체계의 지속적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생산자단체 등에 사무를 위탁하고자 함.

### 나. 동의를 구하는 사항

❍ 『포항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 포항시 친환경축산물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의 공공성,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법인 등을 공개모집하여 위탁함에 있어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 다. 제안근거

❍『학교급식법』 제5조(학교급식위원회 등)

❍『포항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의회 동의)

## 라.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포항시 친환경축산물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 위탁시설수: 2개소

❍ 위탁사무 내용

- 학교급식 친환경 축산물(소・돼지고기) 현물 공급
- 축산물 수급체계 확립을 위한 친환경 축산농가 육성 등
- 그 외에 학교급식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제반 업무

❍ 위탁기간 : 2027. 1. 1. ~ 2029. 12. 31.(3년)

❍ 위탁금액 : 연간 2,954백만원(2026년 기준)

❍ 수탁자 선정 절차

1. 모집방법: 공개모집
2. 수탁자격: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생산자 단체 등
   - 수탁 신청자가 친환경축산물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에 적합한 시설・장비・인력 등을 갖추어야 함.
3. 선정방법: 친환경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선정
4. 심사방법: 정량 및 정성평가 합산점수 70점 이상인 업체 중 고득점 순으로 2개소 선정
   - 정량평가(30점): 현장 확인 및 서류 심사(부서 평가)
     ・ 축산물 인허가사항 및 위생관리, 시설인프라 및 배송처리 능력, 사업실적, 신용평가등급 등
   - 정성평가(70점): 사업계획 발표(심의위원 평가)
   - 과업 이해, 전문성 및 안전성, 지역 농가와 협력체계 구축, 학교급식 클레임 대응, 지역사회 기여도 등
   - 2개소 미만이 응모한 경우, 추가 공모없이 응모한 기관(단체)에 대해서 평가하고 적격인 경우 1개소만 선정
   - 평가점수 70점 이상이 1개소일 경우 선정기관을 1개소로 선정하며 모두 미달일 경우 재공모
5. 선정기준
   - 수행능력: 재정능력, 축산물 유통 업무 관련 전문성 등
   - 시설조건: 급식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인력 확보 등
   -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총무새마을과-20596호, 2026. 5. 27.)
❍ 향후 추진 계획
- 2026. 9.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 2026. 9. 위탁기관 공개모집(40일)
- 2026.11.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개최(위탁 운영자 선정)
- 2027. 1. 위탁운영 개시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박종율)

❍ 본 동의안은 포항시 친환경 축산물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6. 12.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학교급식에 안전한 친환경축산물 식재료 공급과 수급체계의 지속적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생산자 단체 등에 사무를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 결과, 친환경 축산물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은 친환경축산물의 품질·위생관리와 냉장·냉동 보관·배송, 안정적인 수급관리 등에 전문적인 능력이 요구되는 점을 고려할 때 관련 시설·장비와 전문인력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법적·절차적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향후 위탁 운영 과정에서는 품질 및 안전성, 공급가격, 배송 및 공급실적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공익적 기능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4. 질의 및 답변의 요지 : 생 략

## 5. 토론의 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